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의 처리절차 개정〉

■ 김성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11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환 · 장철민 · 오기형 · 이재관 · 민형배 · 강준현
강훈식 · 박수현 · 정일영 · 임미애 · 박성준 · 권향엽
박희승 · 송재봉 · 박해철 · 신정훈 · 윤건영 · 복기왕
이건태 · 송옥주 · 문진석 · 김병기 · 서미화 · 서영석
김원이 · 김남근 · 손명수 · 김영배 · 박선원 · 이원택
윤후덕 · 김정호 · 맹성규 · 이병진 · 김영환 · 주철현
박정현 · 김현정 · 허종식 · 박민규 · 김용만 · 박지혜
안태준 · 허 영 · 이성윤 · 김태년 · 서삼석 · 홍기원
문대림 · 위성락 · 김주영 · 조인철 · 조 국 · 곽상언
한민수 · 박홍배 · 안호영 · 신영대 · 최민희 · 이개호
이연희 · 정성호 · 김 윤 · 김문수 · 노종면 · 박균택
양부남 · 백승아 · 박 정 · 남인순 · 강유정 · 임광현
황정아 · 이용선 · 채현일 · 이광희 · 김승원 · 이수진
문금주 · 위성곤 · 이재강 · 염태영 · 김우영 · 김동아
모경중 · 이언주 · 이훈기 · 장종태 · 전현희 · 이상식
김준혁 · 전진숙 · 이정현 · 조계원 · 김태선 · 황명선
허성무 의원(97인)

2. 제 안 일 : 2024. 6. 4.

3. 회 부 일 : 2024. 6. 11.

※ 의안번호 : 1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130조가 규정하는 탄핵소추 또는 「국회법」 제112조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의 처리 절차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2조(표결방법) ① ~ ⑥ (생략)	제112조(표결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회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u>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u> <u><단서 신설></u>	⑦ ----- ----- ----- ----- ----- ----- -----. <u><후단 삭제></u> <u>다만, 해임건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u>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생략)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u>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u> <u><단서 신설></u>	② ----- ----- ----- ----- ----- ----- -----. <u><후단 삭제></u> <u>다만, 탄핵소추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u>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시행	

「대한민국헌법」 제63조제1항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해임 건의안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의결되도록 하고 있음¹⁾.

한편, 같은 법 제65조제1항은 국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의결되도록 하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음²⁾.

또한, 「국회법」 제112조제7항³⁾과 제130조는 각각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안의 표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 시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됨.⁴⁾

- 1) 「대한민국헌법」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2)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3)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4)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표결 기한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규정한 것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해당 국무위원 등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⁵⁾.

참고로, 지난 제16대국회부터 제21대국회까지 발의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해임건의안은 25건 중 17건(68%)이, 탄핵소추안은 27건 중 13건(48%)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것으로 집계됨(참고자료 참조).

개정안은 현행법상 체포동의안과 유사⁶⁾하게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도 법정 기한(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 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하여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이 표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동폐기되는 것을

5) 해임건의안의 경우, 1963년 11월 개정 국회법(법률 제1452호, 1963. 11. 26)에서부터 현행과 같이 표결기한 및 기한 내 미표결시 처리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었음(“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에 대한 건의가 발의된 때에는 발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임건의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해당 국무위원 등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556).

탄핵소추안의 경우, 1964년 12월 개정 국회법(법률 제1666호, 1964. 12. 30.)에서부터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이 국회법에 규정되면서 표결기한(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역시 국회법에 명시되었으나, 기한 내 미표결시 처리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음. 이 후, 2000년 2월 개정 국회법(법률 제6266호, 2000. 2. 16.)에서 해임건의안과 동일하게 탄핵소추안도 법정기한 내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음. 탄핵소추안의 표결기한 명문화에 대한 입법취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임건의안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해임건의안의 경우와 유사한 취지로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임.

6) 체포동의안의 경우,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체포동의요청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한경과로 표결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왔음.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6.12.16.)시 이를 개선하여 처리기한이 경과한 체포동의안의 처리 논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 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하였음(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24, p.123).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 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 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국회의 권한인 해임건의권과 탄핵소추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못한 경우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다음 본회의 개의 시점까지 해당 국무위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지속 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처리 기한을 72시간 이내로 규정한 취지와 국회의 해임건의권 및 탄핵소추안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016

참 고

국회의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처리 현황

○ 지난 제16대국회부터 제21대국회까지 총 25건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고, 이 중 6건 가결, 2건 부결 및 17건이 폐기되었음.

[표] 제16대 ~ 제21대국회 입법기별 해임건의안 처리 현황

구 분		의 안 명	처리결과
제16대국회 (2000-2004)	8건	국무위원(보건복지부장관 차홍봉)해임건의안	폐기
		국무총리(이한동)해임건의안	폐기
		국무위원(행정자치부장관 이근식)해임건의안	폐기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임동원)해임건의안	폐기
		국무위원(국방부장관 김동신)해임건의안	폐기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임동원)해임건의안	원안가결
		국무위원(법무부장관 김정길)해임건의안	폐기
		국무위원(행정자치부장관 김두관)해임건의안	원안가결
제17대국회 (2004-2008)	2건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윤광웅) 해임건의안	부결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부결
제18대국회 (2008-2012)	1건	국무위원(통일부장관 현인택) 해임건의안	폐기
제19대국회 (2012-2016)	5건	국무총리(김 황식) 해임건의	폐기
		국무위원(법무부장관 황교안) 해임건의안	폐기
		국무위원(교육부장관 서남수) 해임건의안	폐기
		국무위원(법무부장관 황교안) 해임건의안	폐기
		국무위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 해임건의안	폐기
제20대국회 (2016-2020)	6건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원안가결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폐기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폐기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폐기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폐기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폐기
제21대국회 (2020-2024)	3건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원안가결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원안가결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원안가결

- 지난 제16대국회부터 제21대국회까지 총 27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이 중 7건 가결, 1건 부결, 6건 철회 및 13건이 폐기되었음.

[표] 제16대 ~ 제21대국회 입법기별 탄핵소추안 처리 현황

구 분		의 안 명	처리결과
제16대국회 (2000-2004)	4건	검찰총장(박순용)탄핵소추안	폐기
		대검찰청차장검사(신승남)탄핵소추안	폐기
		검찰총장(신승남)탄핵소추안	폐기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원안가결
제17대국회 (2004-2008)	3건	검사(최재경)탄핵소추안	폐기
		검사(김기동)탄핵소추안	폐기
		검사(김홍일)탄핵소추안	폐기
제18대국회 (2008-2012)	1건	대법관(신영철) 탄핵소추안	폐기
제19대국회 (2012-2016)	1건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 탄핵소추안	폐기
제20대국회 (2016-2020)	5건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원안가결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폐기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폐기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폐기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폐기
제21대국회 (2020-2024)	13건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원안가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원안가결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원안가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철회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철회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철회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철회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철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철회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원안가결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원안가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폐기